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02
----------	------------

제안연월일 : 2023년 11월 24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무차별범죄”란 용어는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상동기 범죄”로 하고, 이상동기 범죄 신고를 위한 별도의 신고체계 마련은 현재 운영중인 112를 통한 긴급 신고체계 유지를 위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보완하였음.

2. 주요내용

- “무차별범죄”란 용어를 “이상동기 범죄”로 함(안 제명 및 각 조문).
- “이상동기 범죄”를 정의하고, 이상동기 범죄가 꼭 공공장소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공장소 등의 정의는 삭제함(안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보완함(안 제6조제1항).
-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신고체계의 마련, 지원시설의 설치,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위탁 관련 조문은 삭제함(안 제5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중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를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로 한다.

안 제1조 중 “불특정한 사람들에게서 정당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를 구축하는 것”으로 한다.

안 제2조 중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를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라고 하고, 안 제1호, 안 제2호, 안 제3호, 안 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통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5조를 삭제한다.

안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2.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삭제한다.

안 제11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 중 “무차별범죄 예방”을 “이상동기 범죄 예방”으로 한다.

안 제12조를 제7조로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p>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말한다)</p> <p>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p> <p>사. 시 소속 기관(「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p> <p>아.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p> <p>자. 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p> <p>차.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p> <p>3. “신체적 피해”란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부상, 상해, 중상해(「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중상해를 말한다.)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피해를 말한다.</p> <p>4. "피해자"란 무차별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차별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 삭 제 ></p> <p>< 삭 제 ></p> <p>< 삭 제 ></p> <p>< 삭 제 ></p> <p>< 삭 제 ></p> <p>< 삭 제 ></p> <p>< 삭 제 ></p> <p>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통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 삭 제 ></p>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제 정 안	수 정 안
<p>1. 무차별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p> <p>2. 무차별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p> <p>3. 무차별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p> <p>4. 무차별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시장이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① 시장은 시민이 무차별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에 무차별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6조(사업) ① 시장은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p>1. 무차별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p> <p>2. 무차별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p> <p>3. 무차별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p> <p>4. 무차별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p> <p>5. 무차별범죄 예방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p>	<p>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p> <p>< 삭 제 ></p> <p>2.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p> <p>< 삭 제 ></p> <p>3.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 삭 제 ></p> <p>< 삭 제 ></p> <p>< 삭 제 ></p> <p>제5조(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p>< 삭 제 ></p> <p>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p> <p>2.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p> <p>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p> <p>< 삭 제 ></p>

제 정 안	수 정 안
<p>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p>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삭 제 ></p> <p>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통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2.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